

 개인정보보호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작성과	신기술개인정보과
		담당자	과장 김직동 사무관 정종일
		연락처	02-2100-3061 02-2100-3066

##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, 보호자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

- 개인정보위, 공공·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(4.14일) -

◆ (사례) 워킹맘 A씨는 최근 3살 자녀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여 소아과 의사의 상담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을 알게 되었다.

이에 어린이집에 CCTV 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였지만 당해 자녀 외 다른 사람의 영상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어서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.

→ 보호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개정한 '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'을 근거로 해당 어린이집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 열람을 다시 요구하였고, 그 결과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.

□ 개인정보보호위원회(위원장 윤종인, 이하 개인정보위)는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\*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.

\* 공공·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2종, 개인정보위)

□ 금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개인정보위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2~3월 중 법률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첫째,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신설하였다.

- \* 어린이집 CCTV 열람요청 방법 및 서식, 열람 장소·일시의 통지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의 ‘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’을 참조하거나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(1670-2082, ②번)」를 통해 문의 가능
- 둘째,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하였다.
- \* 보호자가 CCTV 영상원본을 임의 공개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고려
-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“이번에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하여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”라고 하면서
- “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‘공공·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·운영 가이드라인(2종)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누리집(<https://www.pipc.go.kr>) > 정책·법령 > 법령정보 > 지침·가이드라인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